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언

The political issue on women's unpaid work I*
: Imput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강사 尹昭暎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jae, Moon
Lecturer : So-young, Yoo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국민계정체계에서의 가사노동 |
| II. 가사노동 정치화의 요구 | V. 가사노동 가치의 정책반영을 위한 제언 |
| III. 가사노동의 생산성 측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imputation of monetary value of women's contribution to the informal economy for inclusion in satellite accounts to the formal System of National Accounts has been attempted along many methods. This is based on official laborforce statistics and time-use survey. In this statistical system, household work is not an economic activity (or productive labor). Also, the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involved in household work is different from that of sampling survey relating evaluation.

The measurement of women's unpaid work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olicy. To measure unpaid work in the economic terms, we should take following measures: 1) develop satellite or other official accounts to measure unpaid work outside national accounts. 2) conduct a nation-wide time-use survey to measure the unpaid work. 3) develop a proper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use statistics. 4) reexamine the minimum time criterion. 5) determine a proper method of valuing along the law system.

* 이 논문은 두번째 연구자가 학술진흥재단의 1997년 신진연구원 연구과제비를 자급받아 진행중인 논문의 일부임.

I. 문제제기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여성의 해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유엔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서를 수용하게 된다. “개발부문이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부보수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 통계, 그리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측정되고 반영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인 작업은 … 여성의 부보수 기여를 수량화하여 얻어질 수 있다”.

더욱이 1989년 유엔에서 발표한 「개발에 기여한 여성역할에 관한 세계보고서(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에 따르면 비금전적인 가사노동의 수량화작업은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금전적 용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국가별로 실제적인 원칙의 적용이 다르게 되며, 유엔은 이것을 개별 국가의 뜻으로 남겼다. 그에 따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여의 통계자료 수집에 대한 워크샵을 잇따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장관(제 2)실을 중심으로 여성의 부보수 노동의 가치평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 일환으로 1997년 5월에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부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워크샵(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참가국 대표들은 여성의 노동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각국이 무급의 가사노동 측정을 위한 통계적 수단을 개발할 것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여성의 부보수노동, 특히 가사노동을 국가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행동강령이란 부보수노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중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통계 및 센서스의 제반과정에 남녀평등관점을 통합하고, 시간사용조사나 비공식부분조사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경제통계의 수집에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을 검토하고 무보수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그 잠재적 생산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서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주부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입법화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는 평가되어야 마땅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에서 2002년으로 수립한 제 1차 계획기간동안 주부의 가사노동은 평등한 가족관계정립을 위해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 가치측정을 위한 전국적인 생활시간활용조사를 1998년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1999년부터는 국민계정체계의 위성계정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나 법체계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기여를 기능할 수 있는 지표나 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공식통계에서 가사노동은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노동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가사노동의 개념이나 내용 조차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경제나 법체계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주부의 가사 서비스가 정식으로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산출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다루고 조합해야 하는가의 산술통계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가사노동은 시장노동과 달리 무보수로 행해진다는 특성외에도 몇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중복성과 무제한적 특성은 실제로 가사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분류나 시간조

<표 1> 가사노동 요구의 종족 방법

요구 종족 방법의 유형			가사노동 문제의 지향
종족 방법	종족 근거	종족 부문	
제 1차 집단	사적인 종족	비공식 부문	가족원간 분담
시장 기구		영리 부문	영리적 사회화
민간복지단체	사회적인 종족	임의 부문	복지적 사회화
행정 서비스		공적 부문	가사노동의 공적 사회화

출처) 平岡公一, 社會變動と轉換期の社會福祉, 經濟社會學會編, 環境と福祉の經濟社會學, 1984, p.128; 고영복,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1, p.62에서 인용한 표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사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인 기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측정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왜 가사노동이 국가정책이나 국민계정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사노동을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III장에서는 국민계정이나 법체계에서 가사노동을 평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산출근거를 밝히고 이러한 평가작업에서 필요한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IV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할 때 자료이용의 문제와 산술통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힌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근거로 V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II. 가사노동 정치화의 요구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의 요구에 반응하여 이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제 1차 집단, 시장기구, 민간복지단체, 그리고 행정 서비스 등의 활동으로 가능하다(고영복, 1991). 이러한 방법은 요구 종족의 근거에 따라 전자의 두가지 방법은 '사적'인 요구

의 총족방식으로 여겨지며, 후자의 두가지 방법은 '사회적'인 요구의 총족방식으로 여겨진다.

가사노동의 문제를 하나의 요구로 인식했을 때도 이러한 총족방법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개별 가정 이외에 가정밖의 영역, 즉 사회로 이양되어 그것을 대체하는 사회화 활동과, 개별 가정내 가사노동의 요구를 총족시키지 못하거나 다른 사회 서비스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정책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족원간에 분담하는 방법은 가사노동의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개별 가정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총족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를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적 사기업이 사적 소비수단으로 개별 가족에 사적으로 공급하는 영리적 사회화 형태에 해당되며, 민간복지 단체의 설비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복지적 사회화의 형태에 해당된다.

영리적 사회화나 복지적 사회화 형태는 가사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법주의 해석에 근접한다.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사실이 남성에 의한 억압 및 생산노동에의 착취의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앵겔스는 "여성해방의 일차적 전제는 모든 여성을 공공 산업부문으로 재투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생산에 여성들이 대규모적인 참여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요청하고 나아가서는 애써 사적인 가사노동을 공공산업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현대의 대단위 산업

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서 이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으로부터 축출되고 사적인 가사노동에 묶여있는 한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은 실현될 수 없으며 계속 그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신인영, 1983)고 주장하였다.

만일 가사노동이 여전히 사적이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면, 가정밖에서 직업의 기회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여성해방의 전제로서 불충분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행해지던 집안일과 양육을 사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개념은 반드시 시장노동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은 인간의 삶의 재생산 및 생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노동이며(김혜경, 1985), 인간 상호적 관계(가족 관계)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관계적 노동이고(송혜림·이기영, 1990). 또한 가족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가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가정생산활동(Reid, 1934; Becker, 1965; Beutler & Owen, 1980; 문숙재, 1990))이다. 따라서 여성이 집밖에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그들의 위치를 결정짓는 것은 가사노동의 특성때문이며, 이것은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이 낳는 관계의 질과 삶의 질에 의해 측정된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모두 가사노동의 문제를 당연히 여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재생산 문제나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문제를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성별 노동분담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여성 특히 주부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가족원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가사노동 분담원칙은 전통적으로 아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오던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다른 가족원, 특히 남편의 참여를 가정한다. 더욱이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그녀가 전업주부이거나 취업주부든 간에 여전히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제 1차집단인 가정 안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분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노동의 분담은 각 개별가정의 노력이나 분담실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분담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개별가정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진 가족과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가진 가족의 노동분담형태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가사노동의 분담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 각 개별 가정의 가치관, 태도, 의식, 노동분담 형태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기다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정책에 의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의식과 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가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정 외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이와같이 개별가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시장기구나 민간단체의 활동 또는 국가의 행정서비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이때 가사노동의 문제를 공적문제로 이슈화하여 행정서비스를 통해 충족시키는 방법이 가사노동의 정치화에 해당된다. 이때 가사노동 정치화의 개념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또는 개인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에서 나온다(앤 쇼우스터 싸순, 1989). 이것은 오늘날 정치와 국가정책이 사회 또는 인간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즉 일상생활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는 국가와 정치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가사노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일컬어 가사노동의 정치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국가는 국민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활동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내외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각종 생활 장애를 해소하고 경제분배의 불평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정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더이상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경계는 더이상 분명하지 않다. 또한 가정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본래 가정의 기능이었다는 점,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사적이라는 사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문숙재·윤소영, 1996)의 근거는 가사노동이 공적인 특성을 가진 노동임을 증명하고 있다.

가사노동 정치화의 주장은 국가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이 국가정책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법체계와 국민계정체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 분야의 실태는 국민계정체계에서의 노동 범주와 법체계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III.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한 노동의 개념은 '물질 내지 상품생산을 하는 활동'을 충칭한다. 이것은 협의의 노동개념을 일컫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생산적 노동"을 의미한다. 즉 그 노동이 상품성을 가져야 하며, 교환가치, 사용가치, 잉여가치를 가질 때 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광의의 노동개념은 '인간의 합목적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간의 과정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행위를 통하여 자연과 물질 대사를 매개하고 규제하며 조절하는 과정'(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1989; 김정선, 1992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소비를 위한 노동,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 그리고 가족원의 부

양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가정관리 활동 등은 광의의 노동개념에 속한다. 더욱이 생산의 개념을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로서, 어떤 물건을 변형 및 개조 또는 가공하여 그것을 전과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 또 어떤 유형적인 재화 뿐 아니라 용역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조 순, 1983)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가사노동 활동은 생산과정에 포함된다. 가사노동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활동들로서, 가정에서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무보수 가사노동을 경제적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은 투입물의 양이나 가치, 산출물의 생산에 사용된 자본재 투입물의 양과 가치를 통해 가능하다. 이때 투입측정법은 시간사용자료에 근거한 화폐적 용어로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노동을 가치의 근거로 보면서 노동투입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시간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사용된다. 시간사용의 화폐적 가치는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로 가능하다.

첫번째 방법은 가사노동에 사용한 전체 시간과 가정부나 단순 서버비스업 종사자들이 사용한 시간을 비교해서 이루어진다(총합적 대체비용법). 이때 무보수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노동자의 대체직종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대체직종으로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선정한다(김애실, 1985; 최명숙, 1986; 김선희, 1991; 정영금, 1988). 그러나 이와같이 가정부나 파출부의 일반적인 임금률이 적용된다면 가정주부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관리나 계획부분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Hefferau, 1982; 문숙재, 1988에서 재인용), 가사노동영역에 따라 가정부와 총괄관리자 2인을 동시에 대체직으로 선정하는 방법(김애실, 1985; 김선희, 1991)이 이용되기도 한다.

두번째 방법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작업이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 작업과 비교된다(전문가 대체비용법). 이 방법은 가사노동의 영역에 속하는 각 작업을 분류한 후 각 작업에 해당하는 직업노동의 임금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가사노동의 각 작업분류에 따른 시간사용과 대체작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접근법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소비한 시간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또다른 사람의 시간에 기초하여 추정된다(기회비용법). 이때 가정주부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대응되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를 통해 산출된다.

한편, 가정에서 생산된 것의 가치를 시장의 대응물과 비교하여 가정에서 수행된 노동을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산출방법은 가정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시장재화 및 서비스를 결정해야 하며 가정에서 생산된 노동이나 원재료와 같은 투입물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투입한 전체 또는 부분 시간량, 대체직종이나 대체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대응되는 시장생산물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때 여성의 무보수노

동을 추정할 때 이용될 수 자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이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부처나 법조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노동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표 2>와 같은 조사결과들이 여성의 무보수노동을 추정할 때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산물을 대체할 수 있거나 또는 가정생산물과 비슷한 시장재화 및 서비스의 둑등가(equal valu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IV. 국민계정체계에서의 가사노동

1. 노동력조사와 가정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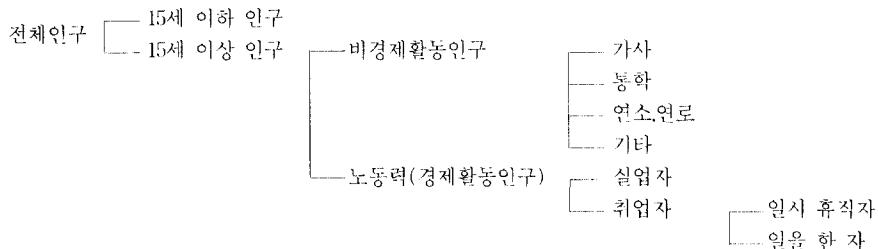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노동력 조사방법은 평상상태집계법과 노동력접근법 등 두가지이다. 평상상태집계법은 각 국민들이 평상시의 경제활동상태를 중심으로 그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묘사하는 조사방식으로 조사대상기간은 3~4개월 혹은 1년을 주로 채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진체인구에 대해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유업자(grainfully occupied population)와 그렇지 않은 무업자의 개념을 통해 노동력을 집계한다.

한편, 특정한 조사대상기간(주로 1주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상태를 단면도로 묘사하는 노동력접근법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명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수입을 복식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과 불가피한 이유로 쉬었지만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한 사람과 일시적인 병 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

<표 2> 한국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조사

분 야	조사복록	조사기관(설시간격)
인구와 노동력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1년)
	고용구조조사	통계청(5년)
국민소득 및 가계조사	국민계정	한국은행(1년)
	도시가계조사	통계청(1년)
	농가경제조사	농림수산부(1년)
임금 및 소득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노동부(1년)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부(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여성고용조사	
생활시간조사	국민생활시간조사	한국방송공사(2년)

1) 가사노동 작업분류에 따른 대체작업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인급한다.



<그림 1> 노동력집근법의 경제활동 분류

<표 3> 국민계정에서 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활동

활동 목록	유형
가족기업이나 가족위의 일이 아닌 경우, 가족의 지불노동을 무보수로 돋는 활동 비친척관계에서 무보수로 일을 돋는 활동	자원봉사활동
친척집에서 돈 안받고 일하는 것(연소자의 경우는 제외)	
여러 유형의 자원활동 (기업) 생산에 연관되지 않은 훈련활동	교육
가사노동 등의 집안일	가사노동
죄수들의 노동	범죄자의 활동
경영에 가담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갖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활동	불교소득

출처 : Hussmanns, Merhan, & Verma(1990), p.20-21; 이재인(1997), p.17에서 재인용

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서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을 말한다(1993 경제활동조사 지침서). 결국 노동력 접근에서 경제활동인구 또는 노동력의 개념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인구로 한 나라의 총노동 공급량을 보여주는 지표를 나타낸다(그림 1).

노동력 접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사로는 경제 기획원이 통계생산의 전체과정을 일괄적으로 감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고용구조조사」가 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화폐가치로 인정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의해 특정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인정되는 일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노동력 개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의 범위를 화폐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UN 국

민계정에서 제안하는 경제활동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UN 국제정책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근거하여 작성한 ILO의 경제활동 범위는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 때 경제적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인 경제적 활동은 시장 판매를 위해 생산활동과 자가소비를 위한 일차생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비시장생산 활동을 포함한다. 즉 1994년 ILO 기준에 의하면 “특정의 조사 기간 내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Anker, 1983; 이재인, 1997에서 재인용)을 경제활동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교육, 범죄자의 활동, 불교소득을 벌어들이는 활동, 그리고 가사노동 등의 활동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국민계정의 경제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노동력조사에서 정의하는 경제적 활동은 취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임금이나 기업가의 이익부분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

〈표 4〉 경제활동인구
(단위: 1000명, %)

1995년	남 성		여 성
	인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16,251	100.0	17,307
경제활동인구	12,433	76.5	8,363
취업	12,153	74.8	8,224
비취업	280	1.7	139
비경제활동인구	3,818	23.5	8,944
가사	485	3.0	6,167
기타(통학, 연소/연로, 심신장애, 기타)	3,333	20.5	2,777
			16.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며,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분류 한다. 이러한 구분은 대개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주부가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부의 비취업 상태는 실업률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현재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5%이고 여성은 48.3%(통계청, 199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인구(전체 10,032,000명)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남성이 4.8% (485,000명)이고 여성은 약 13배 더 많은 61.5% (6,167,000명)이라는 사실은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경제활동 범주에 가정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시킨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48.3%에서 83.9%로 증가한다²⁾. 반대로 남성의 경제활동율은 79.5%로 약간 증가할 뿐이다. 결국 가사노동의 개념을 확대시켜 공식적인 경제효률내에 포함시키면³⁾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생활시간조사와 가사노동의 내용

1981년부터 2년에 한번씩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민생활시간조사」는 매 15분 간격으로 하루의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time-diary)를 통해 조사된다. 이때 하루의 생활활동은 같은 유형의 활동들을 묶기 위해 몇가지로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

고 분석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방식을 이해하여 방송정책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른 생활활동 보다도 여가활동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 된다⁴⁾.

이와같은 생활시간조사는 기존의 화폐가치단위의 조사가 지난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계정의 경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의 영역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상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무보수노동, 특히 가사노동부분이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한편 남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가 제대로 드러나야 가족생활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재인, 1997)에서도 시간 사용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시간이 증대한 만큼 부부간의 가사노동 역할분담이 실현되어야 여성들의 '가족과 일의 갈등(family-work conflict)'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그 활동분류로 알 수 있다. 국민생활시간 조사(1996)에서 가사노동은 구체적 작업을 중심으로 취사, 청소, 세탁, 재봉 및 편물, 일용품사기, 아이돌보기, 가정잡일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학계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을 분류하는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 연구활동에서는 각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가사노

2) 여기서 83.9%란 경제활동인구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한수를 총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3) 실제로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시장통계(The Labor Market Statistics, 1984)와 국제인구조사(Intercensal Population Survey, 1997)에서 이와 유사한 정의로 경제활동율을 세택하고 있다.

4) 예를들어 1995년 조사에서 여가활동은 관람·구경·감상, 스포츠·승무놀이, 행락 및 산책, 취미활동, 기능 및 기술공부, 아이돌돌이, Tape와 CD 청취, 비디오, 영화, PC통신, 컴퓨터 게임 등 12개 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신문이나 잡지, 만화, 그리고 책을 보는 시간이나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달리 분류하여 조사한다.

〈표 5〉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분류

분류방법		구체적인 예
가사*	취사	부엌일, 식사준비, 설겆이
	청소	먼지털이, 걸레질, 쓸기
	세탁	세탁, 다리미질, 말리기, 빨래널기
	재봉, 편물	재봉, 짜집기, 손편물
	일용품사기	가사용품 또는 가사에 필요한 물건사기, 심부름
	아이돌보기	젖주기, 어린이 유치원보내기, 아이들(국민학교이하)과의 접촉
	가정잡일	가구의 정리, 동사무소 가기, 편지, 가계부, 차물기, 가족돌보기 (어린이, 육아제외), 은행가기, 설문지 기입
가사 노동**	식생활관리	식사준비
		식후처리
	주생활관리	청소
		주택청소 및 정리정돈, 이부자리 정리
	의생활관리	주택관리 및 손질
		집손질, 화초가꾸기, 문단속
	가족돌보기	세탁
		세탁물정리, 옷손질 및 바느질, 다듬질
	비신체적 가족돌보기	우유먹이기, 목욕시키기, 옷입혀주기, 잠재우기, 남편 및 웃어른 시중들기
		자녀의 공부보아주기
	기타 관리	가계부정리
		은행, 관공서 일보기
		가정계획 및 가족회의
		시장보기

*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문숙재(1988), 「가정생산」, p.45

동의 하위영역의 분류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영역은 의·식·주 생활관리, 가족원 돌보기, 그리고 기타 관리행동 등 가정내 활동을 중심으로 분류된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영역분류가 다르다는 것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량의 결과를 다르게 하며, 이는 곧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통일된 산출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낳게 한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영역을 세분하는 연구결과들과 국민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량이 전자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강신주·윤복자(1968)의 연구로부터 김정희(1994) 연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의 1일 평균 사용시간량은 최저 7시간 48분부터 최고 11시간 48분까지이다(표 6 참조). 반면에 한국방

송공사(1996)의 연구는 가정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량은 5시간 36분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이와같이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사용했을 때 응답자의 기억회상을 더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평가절하된 가사노동의 시간량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좀더 세분화된 대규모 시간사용조사가 요구된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사용조사는 노동력조사보다 무보수 가사노동의 측정을 다소나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측정도구를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하여 정밀한 도구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가사노동 가치측정을 위한 전국적인 생활시간활용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1999년 부터는 국민계정

〈표 6〉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

(단위 : 시·분)

가사노동 영역 연구자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기타관리	1일 평균 시간
강신주·윤복자(1968)	2.31	-	1.58	3.00	1.28	8.57
안영희(1977)*	4.12	1.20	1.24	0.42	2.12	9.50
임정민·임혜경(1980)*	4.42	1.42	2.06	1.54	1.24	11.48
김해실(1985)	3.48	1.12	1.12	3.12	1.0	10.24
최명숙(1986)	3.36	1.12	1.12	1.12	1.06	8.12
정영금(1988)	4.12	1.24	1.42	2.0	2.06	11.06
김선희(1990)	3.45	1.13	1.17	0.49	0.35	7.55
대륙연구소(1991)	3.06	1.06	1.06	2.30	0.24	8.36
김정희(1994)	3.36	0.48	1.24	1.24	0.36	7.48

* 평일에 해당함

〈표 7〉 성별 가사노동시간량

(단위 : 시간·분)

구 분	전체 남성			전체 여성			가정 주부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가사노동시간	0.14	0.25	0.38	2.23	2.27	2.20	5.36	5.22	4.06
취사	0.01	0.01	0.01	0.56	0.53	0.51	2.10	2.01	1.43
청소	0.02	0.04	0.07	0.26	0.28	0.28	1.01	0.59	0.41
세탁	0.01	0.01	0.01	0.15	0.16	0.17	0.35	0.39	0.28
재봉, 편물	0.00	0.00	0.00	0.01	0.01	0.01	0.03	0.03	0.02
일용품구입	0.02	0.05	0.10	0.18	0.23	0.17	0.49	0.45	0.29
자녀돌보기	0.01	0.02	0.02	0.08	0.08	0.06	0.23	0.22	0.16
가정집일	0.08	0.13	0.19	0.20	0.20	0.21	0.38	0.37	0.28

자료: 한국방송공사·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6

체계의 위성계정을 설치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정화하고 세분화된 가사노동의 영역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임금조사와 대체직종 선정

가정의 부보수활동 중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위임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활동이 임금노동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그 활동은 생산으로 간주된다(문숙재, 1988). 이러한 '제 3자 기준'은 교환관계가 넓어

작하고 디밀 전문화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사회에서 가사노동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Goldschmidt-Clermont & Pagnossin-Aligakis, 1995).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그 활동은 생산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정의 부보수활동 가운데 스포츠활동이나 오락과 같은 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지만 음식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 외의 제 3자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니는 점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노동이 가정안에서 주부가 행할 때에는 무보수로 여겨지지만 가정밖의

〈표 8〉 가사노동 영역별 대체직업 및 평균임금⁵⁾

가사노동분류	노동부(1992)		노동부(1995)	
	대체직업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원)	대체직업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원)
식사준비	조리사	2,593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475
식후처리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 종사자	2,748	가사 및 관련 조력원	2,655
청소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2,036	청소원 및 세탁원	2,655
주택관리 및 손질	건물관리원	2,036	건물관리인	2,340
세탁	세탁공	2,668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2,370
의복관리	세탁공	2,668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2,370
신체적 가족돌보기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 종사자	2,748	가사 및 관련 조력원	2,655
비신체적 가족돌보기	교원	5,930	교육전문가	7,197
가계부 정리	경리원 및 출납원	2,865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사무원	3,666
은행, 관공서 일보기	경리원 및 출납원	2,865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사무원	3,666
가정계획, 가족회의	가사 및 관련서비스 감독자	5,468	종합관리자	9,516
시장보기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2,593	재료기록 및 운송사무원	3,317

출처 : 노동부(1992, 199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⁶⁾

누군가에게 위임된다면 보수가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 그 노동을 누군가에게 대체할 때의 임금으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이때 무보수 가사노동의 대체임금은 시장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취업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가사 노동의 가치를 산출할 경우, 1997년 현재 취업여성의 평균 임금은 935,926원이므로 월 노동시간 201.4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4,647원이 된다. 또한 가사 노동의 각 하위영역에 대응되는 대체직종에 대해 한국표본산업분류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면 〈표 8〉과 같은 시간당 임금률이 적용된다. 또한 가사노동의 내용을 단순노동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적용하면 가사 및 관련 조력원(시간당 2,655원)과 종합관리자(시간당 9,516원)의 평균임금이 적용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이 대체직종과 그 임금을 선정하는 작업은 가사노동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리고 노동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시간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대체직종을 선정할 때에는 6

5)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시도한 연구(정영금, 1988; 김정희, 1994)에서 가사노동의 하위영역별 대체직종은 조리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종사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건물관리원, 세탁공, 교원, 경리원 및 출납원, 가사 및 관련 서비스 감독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 사무원 등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분류는 1990년 노동부의 「한국직업사전(보유편)」에 근거한 것이며 제 6차 개정 한국표본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 고시) 및 제 4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92. 12. 10. 통계청 고시)에 근거한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6) 이 자료에서 임금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이때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한 액수를 말한다.
임금률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2)/근로시간수.

개의 직업⁷⁾과 그 평균임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출근거에 기초할 경우 1달 평균 가사노동가치는 약 5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표 8>의 1995년 노동부의 직업분류에 근거한 경우, 1달 평균 가사노동 가치는 약 73만원에 이른다. 이는 시간조사에서 가사노동의 내용이나 활동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시장노동자의 직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치추정액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산출통계의 문제

주부의 가사노동이 정식으로 국민계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그 특성상 중복생산이나 동시활동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다른 통계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중복생산(joint production)이나 동시활동을 분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활동의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의 중요도에 근거해서 일차적 활동과 이차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차적 시간이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때 구분되는 활동의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활동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인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복시간에 대한 처리에는 어느정도의 원칙이 있다. 예를들면 주부가 아이를 돌보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면 노동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이돌보기에 분류하고, 취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를 한다면 취사에 분류하고, 집에서 침상을 대접하면서 사교생활을 하는 경우는 취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중요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적 시간사용에 대해 1/2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 (Ross & Donath, 1994). 즉 TV를 보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와 자녀를 돌보면서 TV를 보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

하며, 각 활동에 동시적 활동수의 역수만큼씩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가사노동 가치의 정책반영을 위한 제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평가 방법론의 한계뿐 아니라 그러한 접근법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가사노동 가치추정에 대한 방법들을 비교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사 결과나 연구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입안가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사실 동기에 공적 문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종 사회통계의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적 측정 척도의 크기나 성질의 조작은 정책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복지를 나타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계정체계내 노동이나 경제활동의 근거를 화폐단위에서 벗어나 생활의 질이나 복지증진에 부는 광의의 노동개념을 책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력조사와 이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민계정체계는 생명을 위한 생산, 혹은 생존을 위한 생산이라고 부르는 가사노동을 비가시화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즉 이 조사에서는 건강이나 환경, 삶의 질, 개인의 창조성이나 개성 등 이익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자연의 파괴나 질병, 전쟁, 사고, 범죄 등과 같은 모든 파괴적 활동의 경우는 이러한 파괴에 대한 복구가 더 많은 투자와 산업, 이익과 연관된다면 생산활동으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생활의 질 수준을 왜곡하고 있는 국민총생산이나 경제활동수준의 지표를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7)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근로자(취사), 청소원 및 세탁원 (청소), 섭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세탁, 재봉·편물), 세묘기록 및 운송사무원(일용품구입), 교육전문가 (자녀돌보기), 가사 및 관련 조력원(가정집업) 등이 해당된다.

둘째,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단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이나 시간조사는 일관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유일한 공식적인 조사결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곧 가사노동의 가치왜곡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가사노동의 영역분류가 요구된다.

셋째, 가사노동의 내용이나 시간이 정확히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사작업에 대응되는 시장노동자의 직업을 선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주부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업분류체계⁹⁾의 모순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추정은 주부직을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을 선정하거나 가사작업의 하위영역을 각각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정해야만 한다.

이와같이 기존의 가사노동에 대한 접근이 노동력조사나 시간조사연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조사결과나 연구결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들어 노동력접근을 보완하는 시간사용조사가 대단위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화폐가치 중심의 노동력 접근으로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지만 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시간사용조사는 가사노동활동에 소비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소비한 시간조사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은 몇가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가사노동의 개념이나 내용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시간조사결과나 그에 근거한 추정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가사노동시간이 올바르게 조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시간량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단위당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 대단위 시간조사에서 요구된다. 예를들어 의복손질이나 수선은 의복 1점당, 그리고 음식준비와 설거지는 1인분 식사량의 단

위를 기준으로 시간을 분석한다면(Fitzgerald와 Wicks, 1990) 표준화된 측정단위가 될 것이다. 그밖에 시간사용조사방법이 까다롭고 조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이재인, 1997) 조사에 따르는 시간비용이나 추가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시간사용조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상대적 기여도를 가사노동의 사용시간에 따라 활동별 비율로 표시하면 시간사용에 따라 부부의 노동기여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용이하다. 이러한 작업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이나 정책에서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들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세법,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법 등에서 아내와 남편의 노동기여에 따른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고영복(1991).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2)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한국여성개발원, 25-47.
- 4) 김정선(1992). 여성학에서의 재생산 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정희(1994).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대 GDP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6)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 여성해

9) 우리나라의 직업사전에서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말한다.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노동경제연감, 1995).

- 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통계연감
 - 8)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9) 문숙재(1988).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신풍출판사.
 - 10) 문숙재, 윤소영(1996). 가사노동의 사적특성과 공적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99-210.
 - 11) 문숙재,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12) 송혜림·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생활과학연구 15.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6-19.
 - 13) 신인령(1983). 한국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여성학. 서울:이대출판부.
 - 14) 이재인(1997).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 - 우리나라 노동력 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정영금(1988).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16) 조 순(1983). 경제학원론. 서울:법문사.
 - 17) 최명숙(1986).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8) 통계청(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 19) 한국방송공사·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20)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21) Beutler, I. F. & Owen, A. J.(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16-26.
 - 22) Bryant, W. K. & Wang, Yan(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and shared time with apos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7-117.
 - 23) Fitzgerald, J. & Wicks, J.(1990). Measuring the value of household output: a comparison of direct and indirect approach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2), 129-141.
 - 24) Goldschmidt-Clermont, L. & Pagnossin-Aligakis(1995). *Measures of Unrecorded Economic Activities in Fourteen Countri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rking paper, New York.
 - 25) Reid, M.(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26) Ross, W. & Donath, S.(1994). Simultaneous uses of time in household production.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0(4), 433-440.